



분 야 | 산업안전보건

제 목 | 2009년부터 적용되는 법률관련 질의

1. 2009년 1월 1일부터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를 제외한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는
 - (1)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설되는 현장일 경우 반드시 모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요?
 - (2)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면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어디인지?
 - (3) 교육이수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사 및 검정제도가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제도로 변경되었는데 일반적인 건설현장에서 공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안전인증을 받기에는 곤란하므로 적용되는 사항은
 - (1) 타워크레인, 리프트(호이스트)의 자체검사를 기존 1회/3개월 에서 6개월에 1회만 노동부에서 인증 받은 업체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하면 되는지?
 - (2)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업체는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두 곳 뿐인지요?
 - (3)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외주계약을 할 경우 안전검사 업체에서 검사오류 및 작업방법 불량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의 책임범위 및 발생된 재해자는 시공사의 재해자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 1. 안전관리자 및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직무교육 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은 '09.1.10이후 신규로 선임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해 신규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09. 1. 10이전의 선임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신규교육이 적용되지 않으며, '10.12.31이전 3월 및 이후 3월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설되는 현장에서 상기의 직무교육 대상자는 3월 이내(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직무교육 실시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실시할 것입니다. 현재는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3월중부터 각 기관에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위험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가 안전검사로 일원화되었으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는 검사주기 만료 30일 전에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검사 주기는 종전의 정기검사 주기에 준하여 검사주기를 설정하였으며 건설용크레인 및 건설용리프트는 검사주기가 6개월입니다. 또한 안전검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를 행하는 재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의 경우 상기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판단은 사고발생 후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분 야 | 산업안전교육

제 목 |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과 관련하여 사업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바, 동법 시행규칙 별표8의 1에 명시된 교육대상중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중

에서 안전관리자가 교육할 수 있는 대상은 1)작업반장 2)하도급 공사직원 3)하도급 공사팀장 4)하도급 관리책임자(현장소장) 5)원도급사 공사직원 6)원도급사 공사팀장 중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2008-71호, 2008.11.24 불임 참조) 제6조 별표 1 제호 규정에 의한 자가 해당되며, 이들 모두가 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의 교육이 가능하므로 안전관리자가 모두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지정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지만 외부기관만 가능한 교육은 안전보건관계자의 법정 직무교육 정도이며, 발주처(공기업)에서 실시하는 교육 역시 위 규정에 맞는 강사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공사기간은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공사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사용 및 정산도 상기와 같이 공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의 기간에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분 야 | 안전관리비

제 목 | 후방감시카메라의 안전관리비 계상

건설장비에 설치하는 후방감시카메라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의 건설장비의 후방안전시그널(후방감시 카메라 및 이에 연계된 운전자용 모니터)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후방안전시그널은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건설작업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와의 충돌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도로 제작되어 활용되는 경우에 한해 동 사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분 야 | 노무안전

제 목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액의 법적, 실제적 관계와 차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액, 일급액, 월급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최저임금에는 근속수당 등 고정적·일률적 수당이 가산되어 통상임금이 정하여지므로,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액에 비교하여 적어도 같거나 그보다 많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액의 법적, 실제적 관계와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통상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그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서 1)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2)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3)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액·일급액·주급액·월급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최저임금은 그 성격상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될 수 있음에 비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사전확정이 필요합니다. ☺

